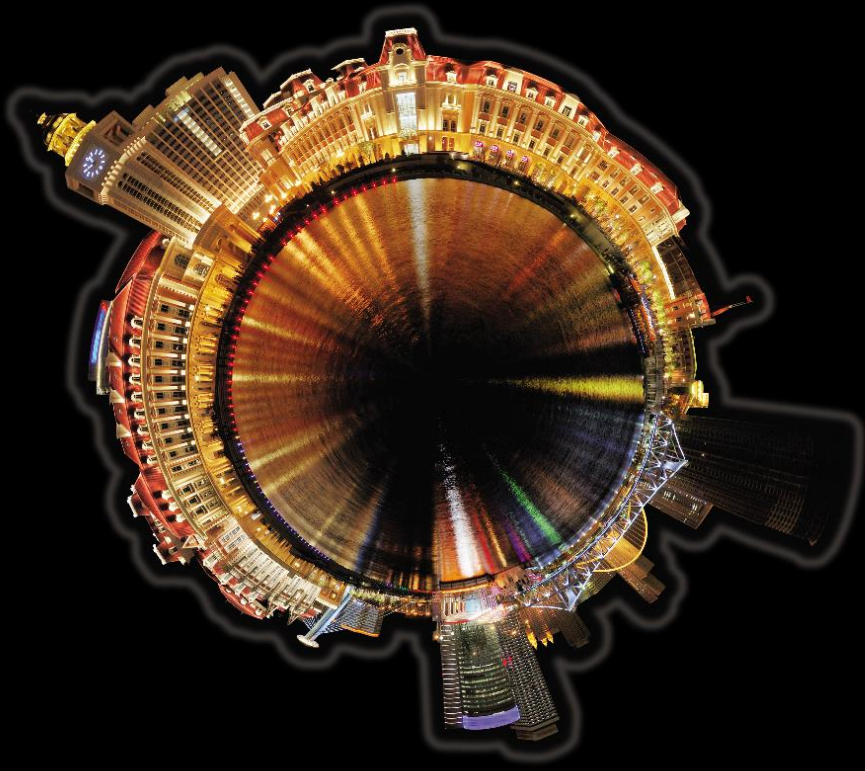


Deloitte.

세무뉴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규정하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의 개정 시행령 초안

2024년7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규정하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의 개정 시행령 초안

재무부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규정하는 정부의 2020년11월5일 제132/2020/ND-CP호 시행령 ("제132호 시행령")을 개정하는 시행령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초안을 공개하였다. 따라서 제132호 시행령의 개정 시행령 초안 ("개정 시행령 초안")은 아래와 같은 주요요점을 포함한다:

1. 특수관계자 거래 유형 a, b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본소유 조항에 관한 132호 시행령 제5조 2항 a & b 점이 추가된다:
 - a) 한 기업은 다른 기업의 최소 25%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다; 기업은 금융기관의 최소 20%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다.
 - b) 두 기업은 모두 같은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최소 25% 지분으로 소유된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같은 제3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최소 20%의 지분으로 소유된다

Deloitte의 예비 평가

위의 추가 조항은 금융기관과 자본소유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한 특수관계자와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다.

2. 금융기관과 관련된 d종류의 특수관계 유형을 규정하는 조항에 관한 제132호 시행령 제2항 5항 d점이 추가한다:
 - d) 한 기업은 차입금액이 차입기업의 자기자본의 25% 이상에 해당하고 차입기업의 총 중·장기부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형태로 (특수관계자의 자금 조달원이 보증되는 제3자 대출 및 유사한 성격의 금융거래를 포함) 다른 기업에 대출을 보증 또는 대여한다.

d점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1) 보증자 또는 채권자는 금융기관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단체이며 이 조항의 a, c, d, e, g, h, k, l, m의 규정에 따라 차입 또는 보증 받은 기업의 경영, 지배, 자본출연 또는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단체이다.

d.2) 보증자 또는 채권자는 금융기관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단체이며 차입 또는 보증 받은 기업은 이조항의 b, e, i 점에 의한 규정에 따라 같은 제3자에 의해 운영, 지배, 자본출연 또는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받지 아니한다.

Deloitte의 예비 평가

위의 추가 조항은 기업이 자본 출연 또는 관리,통제 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증이나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특수관계 유형을 제외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규정하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의 개정 시행령 초안

3. 금융기관의 특수관계에 대한 제132호 시행령 제5조 2항 m 점에 m 유형의 특수관계 유형을 추가한다:

m) 금융기관법 및 개정, 보완 또는 대체하는 문서(있는 경우에 의한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회사

Deloitte의 예비 평가

위의 조항은 금융 기관법에 따라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유형을 추가한다.

4.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이월에 대한 규정 추가

기업은 2024년 이전의 CIT과세기간에 제132호 시행령 제5조 2항 d점에 의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기관으로 부터 차입할 때만 특수관계가 발생하고, 제132호 시행령 제1조 2항에 의한 범위내에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하며, 제132호 시행령 제16조 3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다음기에 이월되지 않은 손금불산입 비용이 있지만 2024과세기간부터 본 시행령 및 제132호 시행령에 의한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고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과세기간의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을 다음 5년으로 이월할 수 없다.

Deloitte의 예비 평가

위의 추가 조항은 기업이 제132호 시행령 제5조 2항 d점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때만 특수관계를 맺기 전에 전기의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이월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기업은 2024년 과세연도에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 과세기간의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을 다음 5년으로 이월할 수 없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규정하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의 개정 시행령 초안

5. 중앙직할시, 성의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인민위원회의 책임에 관한 제132호 시행령 제21조 2항을 추가한다:

제21조. 중앙직할시, 성의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인민위원회의 책임

2. 국가은행은 당사의 업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대출금액, 이자율, 이자지급 기간 및 원금상환 기간, 실제 자금인출, 채무(원금 또는 이자)상환 및 기타 관련 정보(있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과세당국이 요청한 목록에 기초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에 참여하는 각 기업의 해외대출 및 채무상환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협력한다.

세무당국이 요청할 때 금융기관의 특수관계자와 금융기관의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Deloitte의 예비 평가

위의 추가 조항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의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국가 은행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6. "부록 1 -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 정보" 수정

개정 시행령의 "부록 1 -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 정보"는 제132시행령의 "부록 1 -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 정보"를 수정하고 대체한다.

Deloitte의 예비 평가

개정 시행령의 부록1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신고하는 목적으로 개정시행령의 업데이트, 수정사항을 반영한다.

본 개정 시행령은 2024년 CIT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KSG 부대표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